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 공고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단위: 명)

연 번	선 발예 정 과 목	선 발예 정 인 원			연 번	선 발예 정 과 목	선 발예 정 인 원		
		일 반	장 애	소 계			일 반	장 애	소 계
1	국 어	6	-	6	8	가 정	1	1	2
2	수 학	3	-	3	9	정보·컴퓨터	8	1	9
3	물 리	2	1	3	10	보 건	1	1	2
4	화 학	3	-	3	11	사 서	2	-	2
5	일 반 사 회	2	-	2	12	전 문 상 담	3	-	3
6	역 사	3	-	3	13	특 수 (중 등)	8	1	9
7	기 술	2	-	2					
합 계							44	5	49

※ 장애인 구분선발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2항

※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 인원 미달될 경우 선발예정 과목별 일반 응시자 중에서 충원하지 않음

※ 보건, 사서, 전문상담교사는 학교급(유치원,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의 임용은 우리 교육청 임용 계획에 의함

2

응시 자격

□ 선발 분야별 응시 자격

선발 분야	응시자격
중등학교 교사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전문상담 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자격증 소지자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상담 및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응시 대상자가 아님
특수학교 (중등)교사	○ 전공 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 포함)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특수학교 교사(이료)자격증 소지자는 제외
장애 구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구분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7년 2월 해당 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이어야 함 ○ 장애인은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 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 중인 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재외국민인 외국 영주권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 안내

선발예정과목	응시 가능 과목	선발예정과목	응시 가능 과목
역 사	역사, 사회(역사)	가 정	가정, 기술·가정
일 반 사 회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기 술	기술, 기술·가정
물 리	물리, 과학(물리)	정보·컴퓨터	정보·컴퓨터, 전자계산
화 학	화학, 과학(화학)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2조(개정 2026.3.27. 교육부령 제379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응시할 수 있음

☐ 응시 연령: 제한 없음

※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응시 자격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응시자격)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0.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응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최종 시험시행일

☐ 시험 일정 및 장소

구분	일자	시험 과목	시간	대상	시험장소 공고
제1차 시험	2026. 11. 28.(토)	교육학	1교시 09:00 ~ 10:00(60분)	제1차 시험 응시자 전체	2026. 11. 20.(금) 10:00 이후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고시·공고)
		전공	A	2교시 10:40 ~ 12:10(90분)	
			B	3교시 12:50 ~ 14:20(90분)	
제2차 시험	2027. 1. 14.(목)	실험평가	09:00 ~	제1차 시험 합격자 중 실험평가 실시과목 응시자(물리, 화학)	2026. 12. 29.(화) 10:00 이후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고시·공고)
	2027. 1. 20.(수)	수업실연	09:00 ~ 【구상 시간: 20분】 【평가 시간: 20분】	제1차 시험 합격자 (보건, 사서, 전문상담 과목 제외)	
	2027. 1. 21.(목)	교직적성 심층면접	09:00 ~ 【구상 시간: 10분】 【평가 시간: 10분】	제1차 시험 합격자 전체	

※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시행함

※ 응시자 예비 소집은 별도로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 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함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함

☐ 합격자 발표

구분	일시	장소
제1차 시험 합격자	2026. 12. 29.(화) 10:00 예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
최종 합격자	2027. 2. 5.(금) 10:00 예정	

※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 수	배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2021.10.27.)의 [별표2] ‘교직 과목의 세부 이수기준’에 제시된 교직이론 과목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 특수(중등), 보건, 사서, 전문상담도 동일하게 적용
전공	2교시 [90분]	단답형	4문항	8점	○ 교육부 고시 제2021-31호(2021.10.27.)의 [별표3] ‘교사 자격 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 이수 과목(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25~3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과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특수(중등)도 동일하게 적용 ※ 보건, 사서, 전문상담은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서술형	8문항	32점	
	3교시 [90분]	단답형	2문항	4점	
		서술형	9문항	36점	
	소계		23문항	80점	
	합계		24문항	100점	

- ※ ‘출제 범위 및 내용’에 기초하여 출제하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누리집에 공개한 『표시과목의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및 평가 내용 요소』를 참고하여 출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https://www.kice.re.kr>) - [열린마당 - 자주하는 질문-중등교사 임용시험](2126283번)에 관련 내용 탑재
- ※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관련 사항은 “5. 응시원서 접수-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람

□ 제2차 시험

시험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 교과	실험 교과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과	
실험평가	과학 교과* 전공별 해당 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 능력 평가 * 물리, 화학	-	30	-	해당 교과
수업실연	○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	50	20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제외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50	50	100	
합계(배점)		100	100	100	

※ 실험 평가의 세부 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2026. 12. 29.(화)] 시 공고 예정

□ 중등교사 임용시험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 범위

구분	출제 범위
기본 원칙	○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중등학교 교사 표시과목 교육과정	○ 총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 1. 21.)까지 ○ 교과: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1호(2026. 1. 21.)까지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 교육과정	○ 총론: 국가교육위원회 고시 제2026-2호(2026. 1. 21.)까지 ※ 점자 관련 문항 출제는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호, 2024.1.29.)을 적용

< 교과 과목 >

교과	교과 과목	비고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특수 포함)	
보건, 사서, 전문상담 교과	○ 보건, 사서, 전문상담	
실험평가 교과	○ 과학 교과(물리, 화학)	

< 참고 사이트 >

구분	해당 사이트	비고
출제 범위 및 내용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s://www.kice.re.kr)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https://ncic.re.kr)	
	○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https://www.textbook114.com)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 접수 기간: 2026. 10. 12.(월) 09:00 ~ 10. 16.(금) 18:00 [5일간]
 - 접수 기간 내에는 24시간 접수하며, 접수 마감일[10. 16.(금)]은 18:00까지 접수함

※ 단, 원서 접수 기간 내 매일 22:00~24:00 사이에는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하여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 결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의 접속이 한꺼번에 몰려 접수 사이트 다운 또는 속도 저하 등의 이유로 마감 시간까지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니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 기간 중에는 원서를 접수, 수정, 접수 취소를 할 수 있음
- 접수 취소 기간: 2026. 10. 17.(토) 13:00 ~ 10. 19.(월) 18:00 [3일간]

✓ 취소 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지원자가 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으로, 취소 기간에는 추가 접수, 기존 원서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접수 취소 기간에 취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 일반 지원자 중복지원 금지
 - 일반 지원자는 같은 날 시행하는 다른 시·도교육청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 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응시원서 중복 지원 관련 주의 사항
 - 중복지원을 금지함에도 중복으로 접수된 응시원서는 최초 접수된 응시원서만 인정하며, 그 외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취소 기간 전에 취소됨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 중복지원 및 응시 시·도 선택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원서접수 기간에 2개 이내 시·도의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응시는 한 곳만 가능)

✓ 장애 구분 모집 지원 예시

- A시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도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지원: 가능
- A시 장애인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및 B도 일반 구분 공립 국어 지원: 불가능

- 2개 시·도에 중복지원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지원자는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에 미응시할 1개 시·도의 원서접수를 취소해야 함

※ 원서접수 취소 기간: 2026. 10. 17.(토) 13:00~10. 19.(월) 18:00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마감일(5일차)까지의 경쟁률을 원서접수 취소 기간 전에 공개할 예정임

※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 경쟁률 공개: 2026. 10. 17.(토) 10:0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누리집(<https://www.sje.go.kr>-새소식·인사 채용 - 임용정보-중등교원)

✓ 주의 사항

- 취소하지 않을 경우, 최초 접수한 시·도의 응시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
- 실제 응시할 1개 시·도의 응시원서를 취소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소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예시》 장애인 구분 모집 선발 분야의 원서를 A도 및 B시 중복 접수 시 (A도 접수 후 B시 접수)



□ 접수 방법

-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통하여 접수
 - 구체적인 응시원서 접수 방법은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음

✓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https://edurecruit.go.kr> - [중등교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다른 시도교육청도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니 접수 사이트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컴퓨터(PC) 환경
 - 운영체제(OS): 한글 Windows(Windows 11 권장)
 - 인터넷 브라우저: PC 버전 Edge, Chr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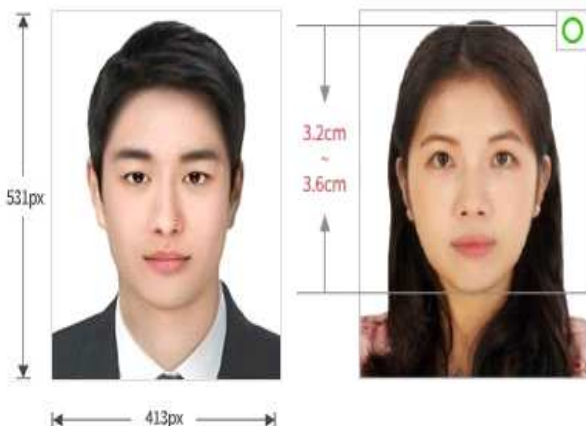
✓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PC 기반 환경은 지원하지 않음
✓ 사용자 컴퓨터(PC) 환경문제로 오류 발생 시 다른 컴퓨터(PC)에서 접수하시기 바람

- 사진 등록
 - 사진 규격: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규격 사진

※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참고

➡ **안내 바로가기** <https://www.passport.go.kr/home/kor/contents.do?menuPos=32>

【사진 예시】



【사진 파일 규격】

- 최근 6개월 이내 여권용 규격 사진
- 가로 395~413픽셀(pixel)(3.5cm)×세로 507~531픽셀(pixel)(4.5cm)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흰색 배경 상반신 정면
-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
- 얼굴이 가려지면 안 됨 (이마, 턱, 얼굴 윤곽, 눈, 눈썹)
- 시험 당일 본인 확인 가능한 사진
- 파일 형식(jpg, gif, png, jpeg)
- 파일 크기(1MB 이하)

사용 가능 사진	사용 불가 사진
■ 얼굴 크기 3.2cm~3.6cm ■ 흰색 바탕 	■ 얼굴 크기 3.2cm 미만의 상반신 사진 ■ 모자 등 착용 사진 

✓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진 유형

- 본인 확인이 곤란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사진 규격, 사진 파일의 '확장자 및 크기'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으로 대폭 수정한 사진

※ 대리 응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실(장)에서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지문 대조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납부

- 납부금액: 25,000원
-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은행 계좌이체의 전자 결제방식
※ 본인 이외 타인 카드도 가능하지만, 가상계좌를 통한 이체는 불가
-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는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업체인 (주)케이지이니스의 명의로 청구됨
- 응시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에 원서 접수를 취소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 및 신청

- 응시수수료를 면제(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응시료 면제자)에 체크하고 응시료 면제 구분 및 해당 동의서에 '요구'를 선택한 후 **자격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검증을 해야 함
-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 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결제를 하여야 하며, **[서식 3]**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같이 스캔 파일로 첨부·제출하여야 응시수수료 면제(환불)를 받을 수 있음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

구 분	내 용
대상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출서류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서식 3] ○ 면제 대상자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증빙서류 1부
서류 제출 기간 및 방법 (검증이 불가하거나, 자격확인 요청이 '요구하지 않음'일 경우)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고

○ **수험표 출력**

- 수험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채용분야 - 중등교원'-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2026. 11. 20.(금) 10:00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시험 당일인 2026. 11. 28.(토)에 신분증과 함께 반드시 지참해야 함
- 수험표는 반드시 컬러로 출력해야 하며, 이면지로 사용하거나 메모(낙서 등)를 할 수 없음(원서 접수 시 출력한 접수증은 수험표가 아님)
- 수험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무작위로 부여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 인정 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인정 범위: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일 전일까지 접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기존 5년 제한 성적 인정 기간 폐지
- 제출 방법
 -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응시원서에 합격등급, 인증번호, 인증(합격)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인증등급 취득예정자: 응시원서에 시험 종류, 접수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반드시 제8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완료 후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함(응시 수수료는 환불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관련 사항 입력 예시 >

	<3급 이상 취득자> • 「회차」를 선택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검증 • 취득여부 확인요청 버튼 클릭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체크박스에 체크(☒)한 후 - 취득한 지원자 본인의 「합격등급」을 선택하고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파일을 첨부
	<3급 이상 취득 예정자> • 시험의 해당 회차(㉔) 확인 • 시험종류: ㉔ “심화” 선택 • 접수번호: ㉔ 접수번호 숫자 10자리 입력 ※ 본인 접수증 확인 ※ 지원자 본인의 증빙자료(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접수 확인증) 파일을 첨부

○ 유의사항

- 인증서 제출은 생략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성적 소명 대상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안내 게시함
-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에 대한 일반원칙

- 접수 시 지원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해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지원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 사항[특히, 가(산)점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응시원서 입력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 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전적으로 지원자에게 있으며, 부당 가(산)점으로 합격한 자의 합격은 취소함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 등의 해당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거나 합격 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 내용 조회 또는 확인 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 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터넷 접수 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스캔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하단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참고)
- 지원자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인터넷 접수 시 스캔 파일 제출 대상자 및 제출서류 >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 제출서류
지원자 전원	○ 교원자격증(확인이 안 되는 경우) 또는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졸업예정자) 1부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민원처리기간(15일)을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단,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검증 완료 시 제출(첨부) 생략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또는 제80회 원서 접수 확인증 1부 ※ 단,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검증 완료 시 제출(첨부) 생략

제출 대상자	스캔 파일 첨부 제출서류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가산점 및 가점” 안내 사항 참고)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	○ 의사상자 증명서 1부(“가산점 및 가점” 안내 사항 참고)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장애인 구분 모집 지원자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 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 (상이등급 기재) 등에서 해당 서류 택 1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자	○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1부(제1차 시험용)[서식 2-1, 2-2] -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의사 진단(소견)서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중 “장애인 등의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참고 <유의 사항>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편의 제공 신청 관련 사항은 “장애인, 임신부 등 응시자 편의 제공” 참고 ▶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시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음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	○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서식 3] - 신청서 작성 후 날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1부 ※ 단,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검증 완료 시 제출(첨부) 생략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대상자이어야 함

✓ 파일 첨부(제출) 방법: 파일명을 <지원자 성명 - 제출 서류명>으로 저장하여 첨부

☞ 예시: 김세종-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jpg, 김세종-의사 진단서.jpg

김세종-응시수수료 면제.jpg

✓ 임용시험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관련 문의

- 문의 시간: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시스템 장애 등 문의: 대국민서비스 상담센터(☎1600-7440)

- 임용시험 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원인사과 임용관리담당(☎044-320-2332, 2326~7)

□ 체육 과목 가산점(체육 과목 입상 경력 및 지도실적)

부여 대상 및 내용			가산점	비고
체육 과목 가산점	선수	○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4점	▶ 체육 과목에 한함 ▶ 정식종목에 한함 ▶ 중복 시 최고점 1개만 선택
		○ 전국(동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자		
		○ 전국(동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자	3점	
	지도자	○ 전국(동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자	2점	
		○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 올림픽,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4점	
		○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1위(금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2위(은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3점	
		○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 3위(동메달) 입상 지도실적을 올린 자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취득자이면서 제1차 시험 과목별(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만 제1차 시험의 성적 총점에 상가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함(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의사상자 가점과는 별도임)

※ 전국체육대회 입상실적 증빙서류는 2018년 이후 발급한 원본검증번호가 있는 증명서로 제출

※ 가산점 적용 기준일: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 체육 과목은 미선발하며, 체육 과목 가산점 관련 사항은 참고용으로 안내함

□ 취업 지원 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

○ 대상자별 가점 부여 비율

구분	가점 부여 비율	비고
취업 지원 대상자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u>10% 또는 5%</u> 를 가산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u>5% 또는 3%</u> 를 가산	

○ 가점 부여 세부 내용

구분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 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 유효하게 등록된 사람 ※ 지원 대상 - 의사자: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 의상자: 1~6급 의상자 본인, 배우자, 자녀
가점 부여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별로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 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 가점 -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 본인: 만점의 5% - 의상자(1~6급)의 배우자, 자녀: 만점의 3%
선발 상한제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 지원 대상자 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 수의 30%, 최종합격자의 경우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3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 수는 제1차 시험 합격자의 경우 해당 시험 합격자 수의 10%, 최종합격자의 경우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각각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하는 자는 선발 10%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아니함
소수 선발 과목	○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라도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할 수 있음	○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9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제1차 시험의 합격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라도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할 수 없음 ※ 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 합격할 수 있음
가점 신청자 유의 사항	○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에 본인의 취업 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보훈 상담센터 ☎1577 - 0606) ※ 원서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현재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 취업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의사상자 등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본인의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 비율(5% 또는 3%)을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함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구분	합격자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1차 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에 가산점과 가점을 합산한 제1차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함 제1차 시험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산점 + 가점 ○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함(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함
최종 합격자	○ 최종 합격자는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과 제2차 시험의 성적에 각각 가점을 더해 합산한 최종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함 최종 점수 = [1차 시험 성적 + 가점] + [2차 시험 성적 + 가점] ※ 최종 합격자 결정을 위한 최종 점수에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음 ○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 과목별 선발예정 인원 이내로 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1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제2차 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 3순위: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복무 만료) 예정자 포함] - 4순위: 수업실연(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5순위: 교직적성 심층면접(제2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6순위: 전공(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7순위: 교육학(제1차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 동점자 처리기준의 시험(또는 과목) 성적은 가점을 제외한 시험 성적임 ○ 제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의 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퍼센트 미만(과락)인 사람 및 각 시험 단계별,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사람은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8

최종 합격의 취소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함

1.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부정행위를 한 사람(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사람
3. 각종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한 사람
4. 가점/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님에도 가점/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사람
5.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2027년 2월말까지 해당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단, 발급기관의 사정으로 늦어지는 경우는 제외)
6.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7. 외국 영주권자로서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 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지 못한 사람(해당국의 영주권 유지 관련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포함)
8. 병역에 복무 중인 자로서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 예정증명서나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9

시험 시행의 일반원칙

-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결격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제1차 시험의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 합격자 성적 사정은 지원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7. 합격자 결정” 참조)의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자로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 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함
- 공고된 시험 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지원자에게 있음
-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그 명부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교원 수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시험 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그 밖의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10 응시자 유의 사항

- 시험 당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응시자 차량은 시험장 내로 진입할 수 없음. 단, 장애인 등록차량은 제외)
- 응시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 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해야 하고, 감독관의 전달 사항 및 응시자 유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 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지 않은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40분 전까지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본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함. 이 경우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제외)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유효기간 내),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주민등록번호 미표시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에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태블릿 PC, 넷북,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시작 후 시험실(장) 내에서 이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함
 - ※ 가방 속 및 시험실 내 별도 장소에 보관한 경우도 부정행위자 등으로 간주하여 처분하며, 감독관의 소지(반입)금지 물품의 수거가 끝난 후 시험실에 도착한 응시자일 경우라도 시험 시작 전에 자진하여 반납하여야 함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 관리가 필요한 응시자는 아날로그(바늘) 시계를 가지고 오시기 바람(전자시계, 휴대전화 등은 사용 불가)
-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지 않고 번지지 않는 동일한 종류의 검은색 필기구(연필, 번지거나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정된 필기구가 아닌 것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평가하지 않음
답안을 수정할 경우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함(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 수정액 등 사용 불가)
- 검은색 볼펜 등 필기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기타 보조기구(귀마개, 모자 등) 착용은 불허함
- 시험 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험 응시 중에 발생하는 건강상 문제 및 그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 배탈, 설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 시간 중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장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단, 사전에 화장실사용 편의제공을 신청한 임신부 등에 한하여 재입실이 허용됨)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정행위자 등으로 처리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음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및 5년간 시험 응시 자격 정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행위(또는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사항,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증빙)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 정지 또는 무효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 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실험 결과물을 변형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장)에 「소지(반입)금지 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 시 이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소지(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블루투스기기, 이어폰, 스마트워치(밴드)·스마트센서, 스마트안경*, 태블릿PC, 노트북, 넷북,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캠코더, 전자시계, 전자계산기, 라디오, 전자담배 등 모든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 스마트안경: 시력교정용 안경 형태를 포함하여 촬영, 녹음, 통신, 정보검색 기능이 탑재된 안경형 기기

※ 감독관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소지(반입)금지 물품 확인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시계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식 화면표시가 없는 아날로그 손목시계(바늘시계)만 가능함

 4.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위의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누리집 주소: <https://www.sje.go.kr>-새소식·인사·채용 - 임용정보-중등교원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용시험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열람·게시·공유하는 행위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편의 제공 대상

- 2027학년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지원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 장애로 인하여 시험 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임신 또는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인하여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편의 제공 신청 절차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및 [별첨]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의 제공 신청 절차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확인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사항 확인 ※ 장애유형(정도), 편의 제공 내용, 증빙서류 등				
↓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	○ 원서 접수 시 장애인(임신부 등)은 지원자 입력 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요청 유무’ 항목 입력 ※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에 기재				
↓					
증빙서류 제출 (의사 진단서 등)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 제공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장애인(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와 함께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제출서류</td><td>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2-1]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서식 2-2] -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등 </td></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ext-align: center;">제출기간</td><td>-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td></tr> </table> ※ 장애 유형별 증빙서류: 하단 내용 참고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2-1]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서식 2-2] -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등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 [서식 2-1] -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1차 시험용) [서식 2-2] -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에 한함) - 의사 진단서 등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 기간과 동일				
↓					
증빙 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안내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 ○ 우리 교육청 누리집 또는 전화 연락 등으로 편의 제공 여부 및 세부 사항 안내(문의: 교원인사과 임용관리담당 ☎044-320-2332, 2326~7)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 장애 유형별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제출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서류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답안 작성용 컴퓨터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4~6급
			- 시험 시간 연장(1.2배)	의사 진단서	
시각 장애	공통		- 확대 문제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답안 작성용 컴퓨터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 서류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 음성 지원 컴퓨터	·	기존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호(2024.1.29.)에 따라 제작] -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3급 2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기존 3급 1,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5배) - 음성 지원 컴퓨터 - 점자 문제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5호(2024.1.29.)에 따라 제작] - 점자 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4급 2호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축소 문제지(확대 독서기 사용자)	·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제출서류	비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시험 시간 연장(1.2배)	·	기존 4, 5급 1호
		·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 이하로 감소한 사람		·	기존 5급 2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시력 0.3 이하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	기존 6급
청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 제공 신청서, 장애인 증명 서류	기존 2~6급

- ※ 확대 문제지는 A3 규격의 13point, 18point, 30point로 확대된 3종류 중 택 1 함
- ※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 위 시각 장애의 시력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포함한 시력 교정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하며,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시각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라도 편의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세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의사 진단서는 하단의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함
- ※ 장애 유형 기존 등급 등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임신부 등 제1차 시험 편의 제공 내용

구분	편의 제공 내용	제출서류	비고
임신부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책상 높낮이 조절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 진단(소견)서	임신부 상태를 고려하여 편의 제공 내용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방광증후군 환자	-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편의 제공 신청서, 의사 진단서	진단서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 제공 내용 결정

- ※ 의사 진단(소견)서는 하단의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발급

○ 장애 유형별 제2차 시험(수업실연 및 교직적성 심층면접) 편의 제공 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비고
지체 장애	상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 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기존 1~6급
	하지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에게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기존 1~6급

장애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내용	비고
뇌병변 장애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회에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 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기존 1~3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기존 4~6급
시각 장애	공통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회에 사전 고지 - 전담 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 서식 확대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점자 사용이 필요한 자	- 관련 서식 점자 지원 - 음성 지원 컴퓨터	기존 1~2급, 3급 2호, 4급 2호 중 점자 사용을 인정받은 자
	점자 사용이 필요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 제공 내용만 신청 가능	
청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평가 시간 1.5배 연장 - 장애 특성을 평가위원회에 사전 고지 - 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제2차 시험 편의 제공의 경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별 편의 제공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서식 2-3](#)], 증빙서류[장애인 증명 서류,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응시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증빙서류에 번동이 없는 경우 기 제출한 증빙서류로 갈음함

○ 시험시간 연장

- 제1차 시험

시험 과목		시험시간		
		일반 응시자	1.2배 연장자	1.5배 연장자
교육학		09:00 ~ 10:00 (60분)	09:00 ~ 10:12 (72분)	09:00 ~ 10:30 (90분)
전공	A	10:40 ~ 12:10 (90분)	10:52 ~ 12:40 (108분)	11:10 ~ 13:25 (135분)
	B	12:50 ~ 14:20 (90분)	13:20 ~ 15:08 (108분)	14:05 ~ 16:20 (135분)

- 제2차 시험

✓ 제2차 시험의 시험시간 연장은 평가시간만 연장함

시험 과목	대상	시험시간	
		일반 응시자	1.5배 연장자
수업실연	- 뇌병변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구상 20분 / 평가 20분	구상 20분 / 평가 30분
교직적성 심층면접	- 청각장애	구상 10분 / 평가 10분	구상 10분 / 평가 15분

< 편의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하여 응시자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해당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확인
 - ▶ 의사 진단(소견)서의 해당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기재
 - ※ 의사 소견서는 임신부에 한함
-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점자 답안지, 확대 문제지, 음성 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 제공을 희망하는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인 응시자 또는 임신부 등 편의 제공요청 입력화면에 신청한 후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스캔하여 첨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점자 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한 자는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 ※ 점자 문제지는 음성 지원 컴퓨터 신청자(시각 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단, 문제 풀이 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문항의 경우 신청이 없어도 점자 문제지를 제공할 수 있음)
 - 음성 지원은 센스리더 Pro/Next(ver 8.7 이상) 환경으로 제공함
-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원서 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함
-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 당일 감독관의 사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음
- 의사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됨(하단 “의사 진단(소견)서발급 시 유의사항”의 발급 일자 및 발급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됨(임신사실확인서 불인정)**
 -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https://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음(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다음의 경우 편의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청한 내용과 의사 진단(소견)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 ▶ 증빙서류[의사 진단(소견)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 의사 진단(소견)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제2차 시험 관련 편의 제공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접수함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유의 사항 >

- **발급 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 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 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진단(소견)서도 인정함
 - ※ 의사 소견서는 임신부에 한함

- 발급 일자: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이번 시험의 경우 2024. 10. 17.(목) 이후에 발급된 의사 진단(소견)서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하단 설명 및 예시 참고)

< 의사 진단(소견)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①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하단 예시표 표시 내용 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 사항(하단 예시표 표시 내용 ②)
- ③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하단 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임신부의 경우에는 임신주수, 편의 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 제공 신청 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 문제지 및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의사 진단(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 유형·정도		발급 내용 예시
시각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인 사람으로 ②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 ③ 점자 문제지, 시험 시간 연장, 음성 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①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②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상기인은 ①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나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사람으로, ②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 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① 임신 00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 ② 자궁의 확대에 의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책상 높낮이 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상기인은 ① 신경성 방광의 기능장애로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 환자로, ② 빈뇨, 절박뇨 증상으로 시험 도중 긴장하면 빈뇨, 절박뇨 증상이 나타남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③ 시험 중 화장실 이용 및 좌석 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12 각종 증빙서류 제출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각종 증빙서류 제출 대상 및 기간

- 증빙서류 제출 대상자: 제1차 시험 합격자
- 제출(증빙)서류: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단, 교원자격증은 사본 제출)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

* 단, 의사진단서는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4년 10월 17일 이후)에 발급된 원본 제출

<각종 증빙서류 제출 주요 내용>

대상자	제출일	제출처	제출방법
제1차 시험 합격자	2026. 12. 30.(수) ~ 12. 31.(목) [2일간] - 접수시간: 10: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회의실(4층) (☎044-320-2332, 2326~7)	○ 방문 제출 - 대리 제출 가능 (단, 위임장 제출 필요) ○ 등기우편 제출 -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 [서식 1]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에 기입·편철하여 제출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 제출 서류

구분	제출 대상	제출 서류
공통	○ 졸업자	▶ 교원자격증(사본) 1부
	○ 2027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 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 예정자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또는 해당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 예정 확인서(원본) 1부(택1)
	- 대학원 졸업 예정자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졸업 예정자로서 복수 과목 응시자	▶ 복수전공 이수(예정) 증명서(원본) 1부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과목 포함)과 법정 해당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소재한 시도교육청에서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를 발급받아 제출		

구분	제출 대상	제출 서류
해당자	○ 병역의무 이행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복무 만료)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1부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적용 시 활용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금)] 기준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 서류 일체 - [서식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 장애인 증명서류 - 의사 진단서(해당자) ※ 원서 접수 시 스캔하여 제출한 서류의 원본 각 1부(단,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제출)

13 시험 관련 정보공개 안내

□ 응시원서 최종 접수 결과 공개

- 일시: 2026. 10. 21.(수) 10:00 이후 (예정)
- 장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누리집
※ <https://www.sje.go.kr>(경로: 새소식·인사·채용 → 임용정보 → 중등교원)

□ 시험 문제 공개

- 공개 범위
 - 공 개: 제1차 시험 문제
 - 비공개: 제2차 시험 문제
- 기간: 제1차 시험 시행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기간
- 장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
※ <https://www.kice.re.kr>(경로: 자료마당 → 기출문제 → 중등교사임용시험)

□ 시험 정보 비공개

- 제1차 시험: 모범 답안 및 채점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 제2차 시험: 문제지, 모범 답안 및 평가 기준표, 문항별 취득 점수 등

□ 합격선 및 개인별 성적 공개

- 합격선: 제1차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개

※ 개인별 석차, 합격 인원이 2명 이하인 과목의 합격선은 비공개

- 개인별 성적: 응시자 본인의 시험 단계별 성적 공개

공개 대상	공개 기간
제1차 시험 성적	2026. 12. 29.(화) ~ 2027. 1. 12.(화)
제2차 시험 성적	2027. 2. 5.(금) ~ 2027. 2. 12.(금)

※ 시험 단계별 또는 시험 과목별로 미응시(결시)하거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으로 결시 처리된 자 및 부정행위 처리자는 성적 확인 불가

- 공개 장소: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

□ 개인별 답안지 열람

- 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정하는 기간
- 범위: 응시자 본인의 답안지 열람만 가능(필사, 복사, 촬영 등 불가)
- 절차 및 방법: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열람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

서식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 1부.

2-1.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필기)] 1부.

2-2.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제1차 시험용(필기)] 1부.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제2차 시험용] 1부.

3.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1부.

4. 위임장(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대리 제출용) 1부. 끝.

【서식 1】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 서류 제출 목록표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목록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	-----	-----------

■ 제출 서류

제출 대상		제출 여부 (제출시 "○" 표)	제출서류
1. 공통	졸업자		◦ 교원자격증(사본) 1부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 교사(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원본) 1부 ※ 2027년 2월말 졸업예정자 ※ 단, 최종 합격 후 2027년 2월말까지 교원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 병역의무 이행자	병역필로 표기한 자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병역 복무 중인 전역 예정자		◦ 전역 예정증명서 또는 전역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 확인서(원본) 1부 ※ 원서 접수 마감일(2026. 10. 16.)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복무 만료) 예정인 자
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자			◦ [서식 2-3]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 서류, 의사 진단서(해당자) 등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에 필요한 서류
4. 개명한 자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서식 2-1】 제1차 시험용(필기)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 과 목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장애(상) 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하는 장애 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 유형		장애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 표시)												
			시간 연장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기타				
			1.2배	1.5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컴퓨터(PC) 음성 지원· 답안 작성		확대 문제지 글자 13P 18P 30P		축소 문제지 (71%) (확대 독서기 사용자)	별도 시험실 (좌석 간격조정)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수화 통역사 배치	서면안내 자료제공	
지체 장애	상지														
	하지														
뇌병변장애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점자 사용 필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점자 사용 필요 없음														
청각장애															
보조 공학기기 지참 허용 및 특이 사항		※ 기재(예: 확대 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 유형 및 정도별로 신청 가능한 사항만 신청해야 함(☐ 표는 제공 불가)
- ※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는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함. 다만, 확대문제지 및 축소문제지를 신청하면 답안작성 PC 중복 선택 가능
- ※ 시각장애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하면 답안은 PC로만 작성함(점자 문제지는 신청자만 제공함. 단, 문제 풀이 시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문항의 경우 신청이 없어도 점자 문제지를 제공할 수 있음)
- ※ 수화통역사 배치를 희망하는 청각장애인은 별도시험실 제공될 수 있음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교육청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 붙임 1.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훈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
2. 의사 진단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서식 2-2】 제1차 시험용(필기)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임신부 등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편의 제공 신청 사항

유형	편의 제공 신청 사항(해당란에 “○” 표시)	
	별도 시험실 배정, 좌석 간격 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책상 높낮이 조절
임신부		
과민성 대장 · 방광증후군 환자		

※ 편의 제공 신청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이동 및 화장실 대기시간(2인 동시 사용 금지), 감독관(위원) 소지품 검사 등]은 시험 시간에 포함됨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신청한 응시자와 같은 시험실에 배정될 수 있음

본인은 편의 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의사 진단(소견)서[의사소견서는 임신부에 한함]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서식 2-3】 제2차 시험용(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장애인 편의 제공 신청서

■ 인적 사항

응시과목		수험번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자택:

■ 장애(상)유형 및 정도, 편의 제공 신청 사항 (해당하는 장애 유형 옆에 장애 정도를 기재)

장애 유형	00장애	장애 정도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편의 제공 신청 내용	<작성 예시 -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작성>		
	o 하지지체 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므로 계단 이용 불가		
	o 청각장애인으로 수업실연 및 심층면접 시간 1.5배 연장		
	o 청각 장애인으로 수화통역사 배치		
	o 청각 장애인으로 면접 질문 및 응시자 답변을 노트북(PC)으로 입력하여 면접 진행		
	o 청각 장애인으로 보청기 등 소리증폭장치 지참 허용		
	o 청각 장애인으로 평가위원과의 거리를 가깝게 조정		
	o 시각 장애인으로 과제 작성 시 주어지는 주제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		
	o 뇌병변 장애인으로 과제를 손으로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노트북(PC) 제공		
	o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항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별로 제2차 시험(수업실연, 교직적성 심층면접)에 신청 가능한 사항만 필요한 편의 제공 신청을 해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 제공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교육청에서 최종 확인한 내용에 따르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증명 서류[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 기재), 보호보상대상자증(상이등급 기재), 국가보훈등록증(상이등급 기재)] 사본 1부(단, 제1차 시험 시 미제출자에 한함)

2. 의사 진단서[편의 제공 신청 시 의사 진단서 제출 해당자] 1부.

※ [붙임 1·2] 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생산 시 스캔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 제출서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제출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서식 3】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면제(환불) 신청서

(사회취약계층 등 응시자만 해당)

■ 인적사항

응시과목		성명		생년월일	
------	--	----	--	------	--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응시자 해당 여부 란에 “○” 표시)

면제 대상	응시자 해당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증빙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증빙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증빙서류: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의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상기와 같이 응시수수료 면제(환불)를 신청합니다.

붙임 면제 대상 증빙서류 1부

2026.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서식 4】 위임장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위임장

위임 내용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서류 대리 제출	
위임받는 사람 (대리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제1차 시험 합격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와 같이 2027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특수(중등)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각종 증빙 서류 대리 제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귀하

※ 위임하는 사람(제1차 시험 합격자) 및 위임받는 사람(대리 접수자) 신분증 지참

유의 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거짓으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